

2024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 보고

1. 보고이유

가. 「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16조 규정에 따라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(통합계정) 운용계획 변경(3차)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2024년 가결산 결과에 따른 예수금·예탁금 변경 반영

나. 운용규모 : 1,474,788백만원(당초 계획 대비 40,000백만원 감소)

〈 수입 및 지출 변경내역 〉

(단위: 백만원)

〈 수입계획 〉			
구 분	2차변경 (A)	3차변경 (B)	증 감 (B-A)
계	1,514,788	1,474,788	△40,000
용자금 원리금회수	16,172	16,172	-
예수금	1,343,211	1,303,211	△40,000
예탁금 원금회수	13,920	13,920	-
예치금회수	92,292	92,292	-
이자수입	49,193	49,193	-

< 지출계획 >				
구 분		2차변경 (A)	3차변경 (B)	증 감 (B - A)
계		1,514,788	1,474,788	△40,000
재무 활동	소 계	1,514,781	1,474,781	△40,000 (△2.6%)
	예수금 원금상환	33,650	33,650	-
	예수금 이자상환	61,360	61,360	-
	예탁금	1,275,735	1,235,735	△40,000
	예치금	144,036	144,036	-
행정 운영 경비	소 계	7	7	-
	기본경비	7	7	-

※ 의회의결을 받은 2024년 당초 운용계획(1,499,671백만원) 대비 3차 운용계획의 지출 금액이 2.7% 감액(정책사업 기준)되어, 의회의결 불요

○ 수입계획 변경

－ 예수금 : 1,343,211백만원 → 1,303,211백만원 (△40,000백만원)

- 주택사업(특) 도시정비계정 525,300 → 485,300백만원(△40,000)

○ 지출계획 변경

－ 예탁금 : 1,275,735백만원 → 1,235,735백만원 (△40,000백만원)

- 교통(특) 교통관리계정 370,500 → 320,500백만원(△50,000)
- 도시철도건설(특) 451,735 → 511,735백만원(60,000)
- 주택(특) 국민주택계정 340,200 → 290,200(△50,000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「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16조(보고)
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6조(보고)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, 보고시기가 폐회 중일 때는 상임위원장에게 우선 보고한 후 다음 회기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여 보고한다.

※ 작 성 자 : 예산담당관 예산총괄팀 김민영(☎ 2133-6813)